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접적 및 융복합을 통하여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녹색산업 등의 첨단 기술 창출 및 육성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235호, '21.12.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범위,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요건,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임

3. 주요내용

가. 녹색산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신설)

나.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신설)

다. 녹색혁신기업의 매출액, 기술 수준 관련 지정 요건을 정함(안 제10조 신설)

라.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신설)

마.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탁(안 제17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9. 14. ~ 10. 25.) 예정

2) 행정규제 : 협의 예정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및 사목에 따른 폐기물 에너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등 저탄소가스의 포집·운반·공급·이용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운반·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이용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녹색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

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녹색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산업의 국내 현황 및 국제 동향
 2.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지원 현황
 3.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집적 및 융복합 현황
 4. 녹색산업등의 시장·기술 현황
 5. 녹색산업등의 관련 기업 및 종사자 현황
 6.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녹색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전문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이 있을 것
2. 관할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정한 사항외에 환경부장관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 기반시설 확보계획
3.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계획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3.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5.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시설
6.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제10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녹색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 기술인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할 것
2.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할 것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지정신청을 검토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이 법 제17조제1항3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정기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취소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취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녹색혁신기업에 통보하고 녹색 혁신기업 지정서를 회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기준 등 녹색혁신기업의 정기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연구지원 기반 확보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연구개발 된 기술의 보급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지정신청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8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18조 제1항3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전문연구기관에 통보하고 전문연구기관 지정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14조(녹색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국내외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에 관한 사항
2.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녹색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지정신청을 검토하여 동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나 정기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통보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회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기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기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2.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

2. 법 제17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3. 법 제17조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에 대한 정기평가

4. 법 제19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5. 법 제19조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정기평가

6.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및 현지 실증화 등 지원 사업

7.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환경산업기술원의 장 및 전문운영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료 또는 현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연 락 처	(044) 201 - 6706